

수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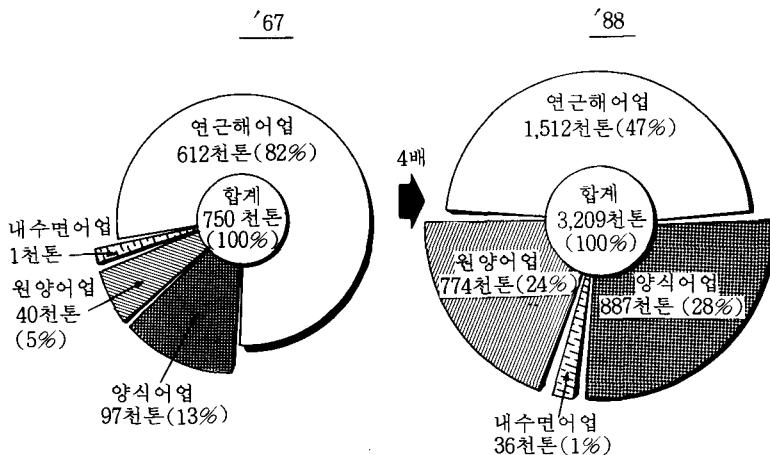
어떻게 지원되나

- '89 수산정책과

어민지원사업안내(발췌) -

수 산 청

1.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구조



'6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나라 수산업은 육지로부터 아주 가까운 연안어장에서 패·조류를 채취하거나 소규모 정치망 어업과 어선어업 등 영세성의 잡는 어업을 주로 하여 왔으나, '70년대 이후 기르는 어업의 획기적인 발달과 대규모 어선의 5대양 진출에 따른 원양어업진흥으로 어업 생산구조가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연근해 수산자원의 동향을 감안할 때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의 비중은 점차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 세계의 수산업 발전과 전망

■ 세계의 수산상황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2차대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매년 6%의 견실한 증산을 이룩함으로써 인류

의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되어 왔으나, 기존의 어종이 대량으로 어획되거나 때로는 남획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에 와서는 연평균 어획 신장율이 1% 내외로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결과 연안국의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와 국제수산기구의 어업자원관리 확대로 국제어업 규제의 강화를 초래하는 등 신해양법 질서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세계 수산업의 여전변화는 금후에 있어서 자원보유국 수역내의 어장개발 및 자원조사 참여 요구, 어업기술 이전 및 불리한 어업합작투자 요청, 임어료의 파다요구 등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이와 반면에 FAO에서 추정하는 금세기 말의 수산물의 수요는 120~130백만톤으로서 공급에 비하여 30백만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각 연안국은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연안해역의 조건이 불리한 국가를 중심으로

증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내수면 어업개발

■ 내수면 어업개발은 크게 나누어 땅·호 등 대단위 수면의 자원 조성과 양어장개발 및 우량 저수지의 양어장개발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 '88년말 현재 대단위 수면은 18개소로 이중 15개소의 수면에 치어방양이 완료되었고, '91년까지는 새로 건설되는 합천, 주암, 임하호를 합하여 21개 전 수면에 치어방양을 완료함과 동시에 민간자본을 투입, 기업 양어장화 할 것이며, 갈수 기에도 물이 남아 있는 우량저수지는 양식계의 공동양어장화 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계획에 따라 '89년부터 '90년까지 2개년에 걸쳐 전국 내수면에 대한 일제 잠재력 조사를 실시하고, '89년에는 치어 29백만마리를 충주호와 소양호, 의암호, 합천호에 방류할 것이며, 양식계 공동 양어장 2개소, 담수어 가공시설 1개소도 지원할 것입니다.

■ 또한 동해안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회귀율이 높아지고 있는 연어 치어도 85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미·소의 북태평양 어업규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그 방류량을 대폭 늘려 나갈 것입니다.

4. 어장보전과 어업질서확립

■ 정부에서는 어장보전을 위해 공단 등이 들어서 심하게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은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오염물질의 배출을 적극 규제하고, 수질이 깨끗하여 수산물 생산 터전으로 보전하여야 할 곳은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88년말 현재 29개소 449천헥타 지정)하여 매립·간척, 준설, 채광 및 공장 설치 등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이 양호한 곳은 청정해역으로 지정('88년말 현재 4개소 21천헥타)하여 수출용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그외에도 오랫동안 양식 및 공동어장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이 침적되거나 노화된 어장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폐망, 폐기물 등을 인양하고 저질을 개선('89: 12천헥타)해 나갈 것이며,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해상과 항공예찰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협조, 해양오염피해배상보장법(가칭)이 제정되도록 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어업피해로부터 어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해나갈 것이며, 각종 오·폐수 및 분뇨 종말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민들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법어업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 소형선 건조현장의 정기 순회점검, 불법어선 출입항 통제 등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해상단속체제를 도단위 합동단속과 전국 일제단속으로 개편하여 강력히 단속할 것이며, 특히 해상 절도 및 폭력배는 해경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업질서는 무엇보다도 어민 스스로가 타이르고 감시하며 자율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 이 첨경이라 생각되며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5. 기존어장의 안정적 확보

■ 우리나라 원양어장은 1957년 인도양 NICOBAR성에 처녀출어하여 시험조업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88년도 말 현재 미국·일본 등 12개국과의 어업협정체결 및 27개국과의 민간어업 협력으로 5대양에 750여척이 출어하여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근해에서의 증산의 한계성을 감안한다면 원양어장 진출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원양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존에 진출한 어장의 안정적 확보와 신어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어장의 안정적 확보와 신어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89년도에는 잡베르데 및 소말리아와 어업협정체결을 추진하고 3~4개국에 어업교섭단을 파견할 것이며 4~5개국의 유력인사도 초청하는 등 민·관 수산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6.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국제수지 흑자인 면과 수산업 내부적으로는 원양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등 연안국의 수입개방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 '88년 말 현재 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은 40.2% (수산물총 328개 품목 중 132개 품목)로써 국가 전체 품목의 94.7%나 농림수산물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늘어나는 국내수요와 연관지어 볼 때 수입의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 그러나 일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생산 어민을 보호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미리 예시하여 이에 대비토록 할 것이며,

■ 어선감척 등 어업구조 조정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어민 보

호대책을 마련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 검사법 개정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7. 어민부담 경감

■ 어촌사회는 도로·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이 불리하고 연안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경영비 증가 등 어업경영에 애로가 증대되고 있어 '89년도에는 영어자금 4,800억 원 등 각종 자금 6,400여 억 원을 공급하고 '86년도 농어촌 종합대책과 '87년도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에 의한 금리인하로 어민이 내야 할 이자 77억 원을 정부에서 대신 갚아주고 선원공제료와 태풍피해어민의 약정이자 18억 원도 보조하게 되며,

■ 지난해 30톤미만 어선과 50톤 이상 어선 승선원의 공제료 국고보조율을 5%씩 올린데 이어 금년에는 30~50톤급 어선 승선원에 대해서도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입니다.

■ 그외에 이가부채 대책비로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특히 연근해(양식·공동어업 포함) 및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 공포되어 이에 따른 관련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8. 어촌 개발

■ 현재 우리 어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업구조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및 농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도로, 상수도 등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도로건설, 상수도·전기시설에서부터 마을간 도로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수신청에서도 이러한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폐쇄하고 살기 좋은 복지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15개소에 45억 원, 어선원복지회관 건립 1개소에 5억 원, 급우 급수시설에 5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어촌부업사업도 확충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또한 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4개 수산고등학교에서 32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보조하며 장학금도 1인당 5만 원 정도씩을 지원할 것이며

■ 또한 그간 4,147명을 선발, 30,355백 만원의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한 바 있는 어민후계자도 금년에 150명 선발하여 이들을 중핵어가로 육성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9. 어장을 청소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 어장환경 정화사업은 폐항목, 폐망 등 어장의 각종 오물을 제거하고, 어장저질을 경운하는 사업으로서 어장환경개선을 통하여 어장 노화와 각종 병해 및 오염 등으로부터 어장을 보전하고 단위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86년부터 총 사업비의 80% 범위내에서 국비로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을 희망하는 어민은 연초에 시·군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의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시·군 수협장이나 업종별 수협장이 수협중앙회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수협중앙회에서 종합 검토한 뒤 당해 수협장을 사업자로 선정, 실시하게 됩니다.

■ 대상어장은 14만 1천헥타로 '88년까지 3만 4천헥타를 정화한데 이어 '89년도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1만 2천 헥타를 정화하게 됩니다.

■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 나갈 계획으로 90~92년 까지 우선 3만 2천헥타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10. 정부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 연안수역의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민

간 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되는 연안 정착성 고급 수산종묘를 '86년부터 매입, 연안에 방류하기 시작하여 '88년까지 15백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 '89년도에는 16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천만마리의 우력, 꽃게, 대하 종묘를 매입, 연안에 방류코자 하는 바, 동 사업은 도지사가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9월까지 종묘를 생산, 지정된 수역에 방류하게 됩니다.

■ 사업자는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종묘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금후에도 동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이며, '90년부터 '92년까지의 단기계획으로는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5천만마리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11.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

■ 우리나라 매년 3회 정도의 태풍피해를 받고 있는데 9월에 발생하는 태풍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태풍, 폭풍, 해일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어민의 피해신고가 융면을 통하여 시·군, 시·도를 경우, 전설부에 설치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접계되며,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피해지역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액 및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 이 결정이 있은 후에 정부에서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복구지원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보조 및 용자하여 드립니다.

■ 그 외에도 피해가 많은 어민에 대하여는 지방세·학자금

표 1. 복구 지원기준 및 융자조건

	지원기준(%)			융자 조건	
	보조	융자	자담	거치·상환	연리%
○ 어선					
- 5톤 미만	30	60	10	2년~6년	8
- 5~40톤	20	60	20	"	8
- 40톤 이상	-	50	50	"	8
○ 어망	20	60	20	2년~3년	8
○ 중양식시설	70	-	30	3년~5년	8
○ 중양식생물 (치어, 포자, 종폐 등 구입대)	70	-	30	3년~5년	8
○ 수산시설 (유통, 제조 보급시설)	50	50	-	2년~6년	8

감면,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양곡대여, 취로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1).

12. 재해어민 위로금 지급은 ……

■ 재해어민에 대한 위로금 지원대상자는 연근해어업종사자로서 해상 조업중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유가족입니다.

■ 이러한 사고를 당한 유가족이 해당 조합에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자로 1인당 100만원씩 (자기과실일 경우에는 50만원씩) 이 지급되며, 순위는 배우자, 칙계비속, 칙계존속, 형제, 자매 순입니다.

■ 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14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된 자로서 일당 치료비 1만원의 범위내에서 수협중앙회장이 결정하는 금액을 3개월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제가입 어선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 공제가입어선에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는 이 사실을 소속수협이나 중앙회(도지부)에 바로 통보해야 하며 서류를 갖추어 소속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사실을 통보받은 수협에서는 전담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고의 원인과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준비할 서류로는 (1) 공제금 지급신청서(수협비치) (2) 공제증권 (3) 사고사실 증명서(해양경찰대 또는 수협장 발행) (4) 인감증명이며 이 서류가 갖추어지면 3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보상범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침몰, 화재 등으로 선체가 완전히 멸실된 경우(全損)와 원형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공제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 및 손해율이 75% 이상일 때에는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일부 손해(分損)의 경우에는 손해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14. 수협공제의 종류는 ……

■ 현재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제종류는 모두 16종으로서 손해공제와 생명공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손해공제는 어선, 건물 등 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이며 생명공제는 사람의 사망, 폐질, 장해 등의 경우는 물론 무사고 만기 시에도 보상이 되는 공제제도입니다.

■ 손해공제는 어선 보통, 어선 만기, 어선 건조공제, 선원보통, 선원특수공제, 보통화재, 주택화재 및 장기화재공제, 그리고 수산판계단체 종사직원의 재정보증을 대행하는 신원 보증공제가 있습니다.

■ 생명공제는 저축에 중점을 두느냐 사고보상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저축성 또는 보장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 수협의 생명공제 7종 중 저축성 공제로는 단기저축, 생활복지, 복지양로 및 장학공제가 있고 보장성 공제로는 무지개, 치료 및 재해보장 공제가 있습니다.

줍는손 예쁜손 버린손 미운손



畫 報

시아인드 캘프는 대서양에 그 깊은 대형 깊은 물고기 캘프로 아의 가비호티 알마나에서 주류에 나부끼고 있다. 해안에 대체히 무지개 고양이 알마나는 보고데리가 대장장이처럼 깊은 30m의 해저, 바다 위 주류에 강한 흐름에 서둘러 무장한다.

1

그대 내게 오지 않음은
만남이 싫어 아니라
떠남을
두려워함인 것을 압니다.

나의 눈물이 당신인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김추어 두는
숨은 뜻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화염(火炎) 때문임을 압니다.

곁에 있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보내는 아픔이
더 크기에
그립고 사는
사랑의 혹법(酷法)을 압니다.

두 마음이 맞비치어
모든것 되어도
갖고 싶어 갖지 않는
사랑의 보(褓)를 뮤을 줄 압니다.

金初蕙

충북 청주에서 태어남.
청주여고, 동국대학교 국
문학과 졸업.

1964년 『현대문학』 추
천으로 문단에 나옴.
시집 「떠돌이 별」로 제21
회 『한국문학상』, 시집 「사
랑굿 1」로 제18회 『한국시
인협회상』 수상.

시집 「떠돌이 별」, 「사
랑굿」, 「섬」, 「어머니」와
수필집 「그대 하늘에 달
로 끌리라」, 「생의 빛 한
줄기 찾으려고」가 있음.